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50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시 맨발보행로 설치의무 등 (안 제35조제1항제4호 후단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20.

다.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권에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시 맨발보행로 설치의무 등 (안 제35조제1항제4호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다. (생략) 14. ~ 29. (생략)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후단 신설> 5.·6. (생략) ②·③ (생략)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가. ----- ----- 맨발보행로·도로 나.·다. (현행과 같음) 14. ~ 29. (현행과 같음)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이 경우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부대시설의 정의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가 맨발보행로를 설치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¹⁾ 맨발보행로를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개정안은 맨발보행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시 맨발보행로의 설치의무를 「주택법」에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보임.

개정안은 맨발보행로에 관한 사항을 ‘부대시설’의 정의(제2조)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에 동시에 추가하고 있으므로 맨발보행로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맨발보행로 설치의무(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건강증진, 정서적 안정, 여가 등을 이유로 맨발보행로를 선호하는 주민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입주민 다수가 포장보행로를 선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맨발보행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사업주체 또는 입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1) 대다수(17개 중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23.7.),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2023.1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2.) 등)하거나 기존 조례에 반영함(「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2023.6. 개정)).

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여건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맨발보행로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정의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없고, 맨발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용 편의상 포장보행로를 선호하는 입주민도 많아 입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주택협회는 맨발보행로는 다른 부대시설과 비교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보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맨발보행로의 설치 의무화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개별 주택의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고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설치할 경우 중장년 이상의 주 이용층이 아닌 입주민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고, 분양가·관리비 상승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중인 맨발보행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76